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66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김예지 · 유용원 · 정성국
김상훈 · 고동진 · 최수진
김 건 · 서미화 · 권영세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관계 기관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어 학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

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2 신설, 제59조의11제4항 및 제88조의2제3항·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11제4항 후단 중 “그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
하여 그 운영”으로 한다.

제8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25. (생략) ③ ~ ⑧ (생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 2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88조의2(가중처벌) ① · ②

(생 략)

<신 설>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5. (생 략)

-----.

-----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에 대한 인력 · 시설 및 재정지
원 기준을 준용하여 그 운영--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가중처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
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5.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6. (생 략) 4. ~ 7. (생 략) ④ (생 략)	<u>3의6. 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u> <u>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u> <u>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u> <u>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3의7. (현행 제3호의6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